



동래온천재가복지센터입니다!!

다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?

벌써 2023년도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되었네요.

장기요양인정절차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셔서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!

● 먼저 이용절차와 신청자격, 신청방법 및 신청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.

▶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

- 자격 : **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**
- 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* **노인성질환**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*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.
(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☎ 1365)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

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


-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*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- 신청방법 : **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, 「The건강보험」 앱(외국인은 불가능)**

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

-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
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
첨부서류 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- 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	본인이 신청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인의 신분증 1부
	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•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 •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
제출서류	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 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2.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 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	

● 신청의 종류

종류	신청 사유	신청 시기	제출 서류
인정신청	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	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
갱신신청	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	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
등급변경 신청	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	변경사유 발생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
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	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	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요양급여종류·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

장기요양인정신청의 종류는 4가지로 처음으로 신청할 경우 **인정신청**을 하시고
 이 후에 인정 만료, 등급 변경 및 기타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
갱신신청, 등급변경신청,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● 다음은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관한 내용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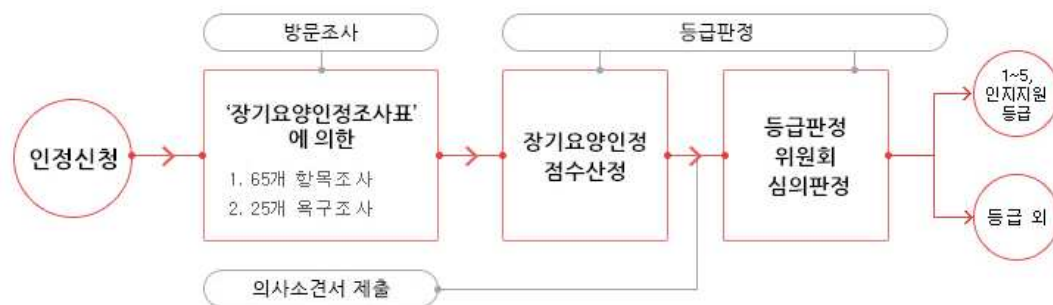
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방문조사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**65개의 항목 조사**와 **25개의 욕구조사** 실시 후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 부터 6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▶ 등급판정 기준

등급판정은 “건강이 매우 안좋다”, “큰 병에 걸렸다.”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“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(장기요양)이 얼마나 필요한가?”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. **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.**

장기요양 등급	심신의 기능상태
1등급	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2등급	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3등급	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4등급	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5등급	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인지지원등급	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
▶ 등급판정 절차



▶ 방문조사

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「장기요양인
점조사표」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.

영역	항목		
신체기능 (12항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옷벗고 입기 • 식사하기 • 일어나 앉기 • 화장실 사용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수하기 • 목욕하기 • 옮겨앉기 • 대변 조절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양치질하기 • 체위변경하기 • 방밖으로 나오기 • 소변 조절하기
인지기능 (7항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 기억장애 • 날짜불인지 • 장소불인지 • 나이/생년월일 불인지 • 지시불인지 • 상황판단력 감퇴 • 의사소통/전달장애 		
행동변화 (14항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망상 • 환청, 환각 • 슬픈상태, 울기도함 • 불규칙수면, 주야혼돈 • 도움에 저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성거림, 안절부절못함 • 길을 잃음 • 폭언, 위협행동 • 밖으로 나가려함 •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건 망가트리기 • 돈/물건감추기 • 부적절한 옷입기 • 대/소변 불결행위
간호처치 (9항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관지절개관 간호 • 흡인 • 산소요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관영양 • 욕창간호 • 암성통증간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뇨관리 • 장루간호 • 투석간호
재활 (10항목)	운동장애(4항목)		관절제한(6항목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측상지 • 좌측상지 • 우측하지 • 좌측하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깨관절 • 고관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팔꿈치관절 • 무릎관절 • 손목 및 수지관절 • 발목관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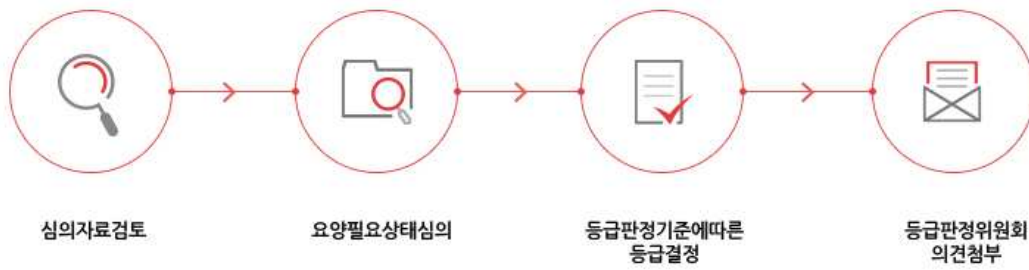
▶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

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「장기요양인정점수」를 산정합니다.

▶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·판정

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, 의사소견서,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
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.

- *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.
- *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.
- *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

심의판정자료	요양필요상태심의	등급판정기준	등급판정기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상생활자립도 등급별상태상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등급 : 95점 이상 2등급 :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: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: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: 45점 이상 51점 미만&치매 인지지원등급 : 45점 미만&치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정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 등

출처 :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

이렇게 노인장기요양인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

언제든 **동래온천재가복지센터 051-919-8899**로 연락

주세요!!

